

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. 06. 14.

발 의 자 : 박종욱 의원 외 2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(2011.10.15. 시행)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자 함. 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(안 제3조 등)
- 나.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4조 내지 제45조, 제47조 및 동법”을 “제44조, 제45조, 제47조 및 같은 법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법 제38조”를 “법 제4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54조의 규정에 따른”으로, “또는 공휴일인”을 “또는 공휴일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”으로, “기타의회의”를 “그 밖의 의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”으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고 한다) 제44조 내지 제45조,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고 한다)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평창군의회</u>(이하 “의회”라한다)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정례회의 회기운영) ①의회는 <u>법 제38조</u>의 규정에 의해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,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.</p> <p>②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과 같이 하되,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제4조(정례회의 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125조</u>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44조, 제45조, 제47조 및 같은 법</u>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제3조(정례회의 회기운영) ①----- ----- <u>법 제44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②영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----- ----- ----- <u>또는 공</u> ----- <u>휴일인</u> ----- ----- 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정례회의 심의) ①----- ----- <u>법 제134조</u>의 규정에 따른 ----- <u>그</u></p>

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5조(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심의) ①의회는 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최하고 매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개최한다.

② (생략)

밖의 의회의 -----
-----.

②-----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-----
그 밖의 -----
-----.

제5조(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심의) ①-----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-----

--.

② (현행과 같음)